

『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검정고시학원의 시 지역 시설규모를 변경(안 별표1)
 - 강의실 연면적을 “120㎡ 이상” 에서 “80㎡ 이상” 으로 완화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2, 팩스 032-440-87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제갈원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11. 23.

발 의 자 : 제갈원영·박종우·박승희·
안영수·이영환·이강호·
김종인 의원
(찬성자 4명)

1. 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검정고시학원의 시 지역 시설규모를 변경(안 별표1)
 - 강의실 연면적을 “120㎡ 이상” 에서 “80㎡ 이상” 으로 완화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나. 관계법령 : 별첨
- 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학원의 시설규모(제2조의3 제1항 관련)

종류	분야	계열	교습과정	강의실 연면적		비고
				시 지역	읍,면지역	
학교 교과 교습 학원	입시·검 정 및 보 습	보통교과	입시형태	300㎡ 이상	150㎡ 이상	
			검정고시	80㎡ 이상	60㎡ 이상	
			보습·논술	60㎡ 이상	60㎡ 이상	
			숙박시설을 갖춘학원	별표4와 같음		
		진학지도	진학상담·지도	60㎡ 이상	60㎡ 이상	
	국제화	외국어	실용외국어	120㎡ 이상	60㎡ 이상	
	예능	예 능	음악·미술·무용	60㎡ 이상		
	독서실	독서	유아 또는 초등학교· 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	90㎡ 이상	60㎡ 이상	
	특수교육	특 수 교 육		90㎡ 이상	60㎡ 이상	
	기 타	기 타	전과정	60㎡ 이상		
평생 직업 교육 학원	직업기술	산업기반기술, 산업응용기술, 산업서비스, 일반서비스, 컴퓨터, 문화관광, 간호보조기술	전과정	별표 3과 같음		
		경영사무관리	전과정	60㎡ 이상		
	국제화	국 제	성인대상 어학, 통역, 번역	120㎡ 이상	60㎡ 이상	
	인문사회	인문사회	대학편입, 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 성인고시	60㎡ 이상		
	기 예	기 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 꽂이, 만화, 연극, 모델, 화 술, 미술, 실용음악, 성악, 현대무용, 바둑, 옹변	별표 3과 같음		
	독서실	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		90㎡ 이상	60㎡ 이상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[별표 1] 학원의 시설규모(제2조의3 제1항 관련)							[별표 1] 학원의 시설규모(제2조의3 제1항 관련)						
종류	분야	계열	교습과정	강의실 연면적		비고	종류	분야	계열	교습과정	강의실 연면적		비고
				시지 역	읍,면 지역						시지 역	읍,면 지역	
학교 교과 교습 학원	입시 · 검정 및 보습	보통교과	입시형태	300㎡ 이상	150㎡ 이상		입시 · 검정 및 보습	보통교과	입시형태	300㎡ 이상	150㎡ 이상		
			검정고시	120㎡ 이상	60㎡ 이상				검정고시	80㎡ 이상	60㎡ 이상		
			보습논술	60㎡ 이상	60㎡ 이상				보습논술	60㎡ 이상	60㎡ 이상		
			숙박시설을 갖춘 학원	별표4와 같음					숙박시설을 갖춘 학원	별표4와 같음			
		진학지도	진학상담지도	60㎡ 이상	60㎡ 이상			진학지도	진학상담지도	60㎡ 이상	60㎡ 이상		
	국 제 화	외국어	실용외국어	120㎡ 이상	60㎡ 이상		국 제 화	외국어	실용외국어	120㎡ 이상	60㎡ 이상		
	예능	예능	음악미술 무용	60㎡ 이상			예능	예능	음악미술 무용	60㎡ 이상			
	독 서 실	독서	유아 또는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	90㎡ 이상	60㎡ 이상		독 서 실	독서	유아 또는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	90㎡ 이상	60㎡ 이상		
	특수 교육	특수 교육		90㎡ 이상	60㎡ 이상		특수 교육	특수 교육		90㎡ 이상	60㎡ 이상		
	기타	기타	전과정	60㎡ 이상			기타	기타	전과정	60㎡ 이상			
평생 직업 교육 학원	직업 기술	산업기반기술, 산업응용기술, 산업서비스, 일반서비스, 컴퓨터, 문화관광, 간호보조기술	전과정	별표 3과 같음			평생 직업 교육 학원	직업 기술	산업기반기술, 산업응용기술, 산업서비스, 일반서비스, 컴퓨터, 문화관광, 간호보조기술	전과정	별표 3과 같음		
		경영사무관리	전과정	60㎡ 이상					경영사무관리	전과정	60㎡ 이상		

국 제 화	국 제	성인대상 어학, 통역, 번역	120m' 이상	60m' 이상	
인문 사회	인문사회	대학편입 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 성인고시	60m' 이상		
기 예	기 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 만 화, 연극, 모델 화 술, 미술, 실용음 악, 성악, 현대무 용, 비독, 웅변	별표 3과 같음		
독 서 실	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		90m' 이상	60m' 이상	

국 제 화	국 제	성인대상 어학, 통역, 번역	120m' 이상	60m' 이상	
인문 사회	인문사회	대학편입 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 성인고시	60m' 이상		
기 예	기 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 만 화, 연극, 모델 화 술, 미술, 실용음 악, 성악, 현대무 용, 비독, 웅변	별표 3과 같음		
독 서 실	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		90m' 이상	60m' 이상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☐ 제8조(시설기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】

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
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
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 당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[별표 1] 학원의 시설규모 중 “검정고시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”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

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

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 등 심의 3.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7. 기타 문제점		
실·국(군·구)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